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및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를 위해 상황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을 변동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II. 주요 개정내용

1.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별표 24)

-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제7호, 제15호 면제사유를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약CD 등을 포함

1) 상황허가 추가 면제대상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제26조 제7호)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고시 제26조 제15호)

2)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 추가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2.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별표 1,2,3,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II.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IV. 시행일자

- 미정. 단, 별표 1,2,3,4의 개정안은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붙임 2] 본문, 별표, 별지

| Contact



강민주 관세사 / Director

T 02-6011-3073

E mjjang@esein.co.kr



성단샘 관세사 / Manager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